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4월 27일 02시 12분



목차

목차	2
사망신고 안내	3
사망신고 의의	3
사망 신고 안내	3
업무개요	3
신고장소	3
신고서 기재 방법	3
사망신고의무자	3
사망신고적격자	3
첨부서류	4
업무처리 절차	4
첨부서류 및 기타사항	4

출생신고 안내	사망신고 안내	혼인신고 안내	이혼신고 안내
성,본 창설 및 개명			



사망신고 의의

사망신고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하는 보고적 신고이다.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사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. 사망신고는 확실한 사망사실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.

사망 신고 안내

업무개요

신고장소

사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(구)·읍·면의 사무소

신고서 기재 방법

- 사망자의 성명, 성별,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
-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
- 사망신고서와 사망증명서상 기재사항 일치여부
 - > ※ 사망장소가 D·O·A인 경우 : 00번지에서 00번지로 후송 중 사망으로 기재(가능한 한 사망지점을 알 수 있도록 세밀하게 기재)

사망신고의무자

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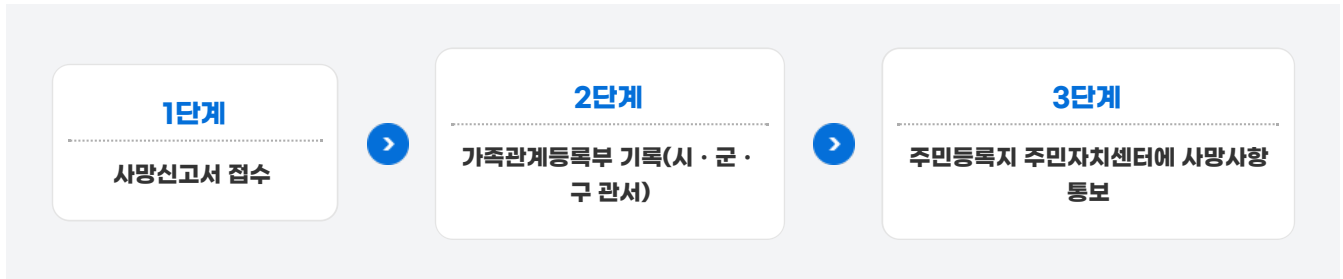
사망신고적격자

- 친족·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
-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·이장

첨부서류

사망진단서, 검안서 또는 2인이상 인우 보증서
※ 인우보증인 경우 증인 2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

업무처리 절차



첨부서류 및 기타사항

- 사망신고서 1부
-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1부
- 과태료(제124조) : 사망일로부터 1개월이내 신고, 해태자 과태료 부과

Yeosu Web Contents

